

기업비밀 표급

2025년 재원운영기준(Compliance)

2025. 09. | 경영총괄 재무회계팀

kt MOS 북부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재원 운영 기준

가. 배경

- 1) 청탁금지법/FCPA(해외부패방지법)/신 윤리경영 원칙에 부합한 재원운영기준 제정을 통해 Risk 발생 가능성 제거
- 2) 특히, 접대성 비용과 유가증권/법인카드에 대한 철저한 사용 관리로 투명경영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

※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11.30.)

-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발의

※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해외부패방지법

- 사업을 수주, 유지하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부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률(KT는 미국 증시 상장법인이므로 적용 대상임)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재원 운영 기준

나. 업무추진비

1) 접대성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일원화

- ① 타계정(부서운영회식비, 회의행사비 등)으로 접대성 비용 집행 금지

【 업무추진비와 타 계정과의 구분】

구분	대상	용도
업무추진비 (접대성 비용)	사업관계자(사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추진비(카드) : 사업관계자 원활한 사업협력, 관계 개선· 업무추진비(대외) : 도서지방(민통선) 관리인 등 관계 개선
	청탁금지법/FCPA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탁금지법/FCPA 대상자에 대한 판매촉진 및 접대성 비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별이 되는 직책명(또는 성명) 기재 必, 다수의 경우 모두 기재
부서운영회식다과비	사내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비용 (다과,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회의행사비	사내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비 (다과, 음식물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2) 청탁금지법 대상(참고_5페이지) 관련 비용 집행 시 제한

- 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 금지
-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및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청탁금지법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 허용(단,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집행 불가)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허용되는 가액 범위 : 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제17조 별표1 기준
 - 단, 경조사비는 화환에 한하여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재원 운영 기준

【 청탁금지법 대상 관련 비용 집행 기준 】

용도별	식사 (5만원)	선물 (5만원 ¹)	경조사비		유가증권	골프	기타 접대성 비용
			금전	화환(10만원)			
가능 여부	가능	가능	불가	임원급 부서장 사전 승인시	불가	불가 ²	불가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별표1(2023.8.30 일부개정) :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가액범위 30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2) 각자 부담만 가능(회사의 회원권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적 이익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식사/선물/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집행 시, 가액을 합산하여 각 가액 범위 중에서 최고액 기준으로 초과 불가

※ 식사/선물 및 경조사비 중 화환 제공의 세부 기준은 청탁금지법을 준용

※ 골프 비용 집행 시 유의 사항(신 윤리경영 원칙_실천지침)

- 임직원간 골프를 위한 집행은 금지

· 단, 사내 공식행사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골프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 임원급(총괄,본부장) 이상의
사전 서면 승인 시 가능(서면 승인의 범위는 '문서, 메일'로 한정하고 승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회사의 골프회원권, 회사경비를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 임원급 이상의 사전 서면승인(문서결재, 이메일 限) 필요

3) FCPA 관련 비용 집행 시 제한

① 청탁금지법 대상은 아니지만 FCPA의 적용을 받는 대상^{예)정당인, 국제기구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대상 비용 집행 시의 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비용을 집행

② 단, 해외의 경우는 현지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해당국가의 사회 상규 등을 고려하여 비용 집행

③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한 의도를 갖고 뇌물(유/무형 불문, 금액 불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재원 운영 기준

【 참고 : 청탁금지법 및 FCPA 적용 대상자 】 KATE >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법령 대상조회』에서 검색 가능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1) 공직자 등

- 공무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선출직 포함,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 공직자 등의 배우자

(3)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법률사무종사 현황조사를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의 감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 등)

<FCPA 적용대상>

(1) 국내/외 공무원(정부부처/지자체 및 선출직, 지위고하 막론)

(2) 국내/외 정부대행기관 임직원(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공직유관단체/공무수행사인, 주한미군 등)

- * 정부대행기관 해당 여부는 해당 기업 또는 단체의 소유 및 통제구조, 기능, 지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안별로 검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함
- 소유지분(반드시 과반수 이상일 필요없음)
 - 정부기관의 통제(control) 정도 (주요 이사 선임 여부 등 포함)
 - 법인의 설립배경, 목적, 법인이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은 영역이 있는지 여부,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도

(3) 국내/외 국제기구 임직원(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적십자사 등)

(4) 국내/외 정당(정당인/정당간부/ 정당추천 후보자)

- 정당인은 중앙당/시 · 도당 당직자 /사무처 직원, 시 · 도당 위원장/당협위원장, 시 · 도당 대의원을 의미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재원 운영 기준

4) 회계 장부 기록 시(적요 작성 시) 사용 내역 구체화

- ① '업무추진비' 집행 시 반드시 아래 작성 예시 준수 필요
- ② 집행목적, 집행대상, 집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업무추진비 적요 작성 예시]

1. 집행목적 및 내용 : (예시 : ○○관련한 원활한 업무 수행)
2. 집행자명, 집행일 : 집행자(ktMOS직원)가 다수의 경우, 대표자(소속부서 기재) 외 n명으로 반드시 기재
3. 집행 대상자

구분	FCPA 적용 대상자 ^(※참고_5페이지)	FCPA 비적용 대상자
회사가 비용 부담 시 (대상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별이 되는 직책명(또는 성명) 기재 必• 다수의 경우, 모두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별이 되는 직책명(또는 성명) 기재 必• 다수의 경우, 대표자명 등 n명으로 기재 가능
각자 비용 부담 시 (대상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 당시 상대방의 소속기관명 기재 必 (단, 사용내역을 골프/식사/교통비 등 구체적으로 명기)	좌동

※ 반드시 "식별이 되는" 직책명 또는 성명을 기재해야 함(예시 : '○○전자 상무' 불가)

4. 집행내역 : 품목, 수량, 총 지출액

- 품목의 단가와 수량 및 총 지출액을 반드시 작성하여 가액 초과 오인 방지(각자 비용 부담 시 명확하게 작성)
(예시 : 저녁식사, 총 8명 중 각자 비용 부담으로 3명*15,000원, 총 45,000원)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재원 운영 기준

다. 유가증권

1) 대상 : 모든 종류의 지류/모바일 상품권 및 기프티쇼(기프티콘)

ex) 백화점/관광/여행/문화/외식/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커피 쿠폰 등), 기프트카드(스타벅스 등)

2) 종류 및 구매 유형별 사용 원칙

① 유가증권의 투명 거래를 위해 **IP구매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구매가 기본 원칙

- 구매 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리수령이나, 지급 대상이 지정되지 않은 선 구매, 캐시 충전은 불가
-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최초 등록된 수신번호 변경 불가(변경사유 발생 시 경영지원팀 요청)

② 법인카드를 통한 유가증권 구매는 불가(직원 대리 수령/선 구매로 간주)

3) 운영 기준

① 직원 보유 금지 : 선 구매 및 대리 수령 금지

② 유가증권 현금화 금지

③ '청탁금지법' 및 FCPA 적용 대상을 위한 구매 금지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기프티쇼 포함)은 '선물'에서 제외되므로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시행령 제17조 별표1)

④ 예산계정 통제 ※ 용도에 해당하는 적정계정으로 집행 必

용도	집행 가능한 예산계정	주요 금지 계정
직원 포상, 복지, 이벤트 등	부서운영회식다과비, 기념품(생일/창립/명절/기타), 포상비, 체육행사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각종행사경비 업무추진비(청탁금지법 및 FCPA 적용 비대상 限)	지급수수료

⑤ 경영상의 이유로 운영 기준 외 유가증권 구매 필요 시 감사실 사전 검토 요청

※ 여행 관련 지류상품권은 퇴직예정자에 한하여 예외 구매 허용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재원 운영 기준

4) 원천 징수

- ① 직원 및 외부고객 대상으로 유가증권 지급 시 원천징수 필요
 - 직원 지급 시 금액 상관없이 반드시 원천징수
(단, [소득세법 제 12조]에 의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 시 비과세)
 - 외부고객 지급의 경우 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 필요
 - 2개 이상의 지급 건이 실질적으로 1건에 해당하는 경우, 1건으로 보아 5만원 초과 여부 판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 필요 경비 인정 대상 시는 필요 경비 제외한 금액이 5만원 초과 시 과제

5) 구매 상세 가이드

구분	상세 가이드
지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대상인 ktMOS직원· 외부직원 ex)감사실 이벤트 등
지출결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첨부문서: 집행근거와 대상자가 기재된 문서· 지출결의서 작성 시 적정 적요 작성 및 필수문서 첨부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대상자와 실수령자 일치 여부· 소득누락 방지를 위하여 경영지원팀 모니터링 必

※ 경영상의 이유로 구매 상세 가이드 미준수 사유 발생 시 감사실 사전 검토 요청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재원 운영 기준

라. 유가증권 외 물품구매

1) 기준 : IP 구매 원칙

- ① 업무용 물품 : 업무 처리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재/공구/사무용품 등의 경우 법인카드 구매 인정
 - 구매 목적/품목/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적요 작성 필수
- ② 직접지출(개인현금/카드) : 불가피한 경우 사전승인 후 직접구매 허용(단, 3만원 이하 구매 시 생략 가능)
 - 구매 유형에 따른 표준적요 작성 및 구매 세부내역(품목/수량/단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必
- ③ 선장품 : 고객 판촉, 임직원 복지 목적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물품
 - 선장품 수불부 작성 및 관리 철저
 - 직원 및 외부고객 대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필요(유가증권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과 동일)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재원 운영 기준

마. 법인카드 관리

1) 법인카드 집행기준

① 법인카드 사용 제한 및 중점 검토 업종 지정 운영

- 사용제한 업종 : 시스템을 통한 원천 차단

업종 분류	상세 업종명
유통업종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요정, 캐바레, 유흥기타
위생업종	찜질방 · 목욕탕, 종합병원, 일반 · 치과 ·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방, 유사의료업, 이용원, 미용원, 피부미용원, 미용재료원, 사우나,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발마사지등)
레저업종	총포류판매점, 카지노, 헬스클럽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전자상거래PG상품권, 전자상거래오픈마켓상품권, 상품권, 면세점
기타업종	귀금속점, 시계전문점, 국산자동차판매점, 수입자동차판매점, 중고자동차판매점, 오토바이판매점, 성인용품점, 애완동물점, 동물병원, 초 · 중 · 고등 · 대학교 · 대학원 각종 납입금, 등록금, 예체능계 학원, 각종학원, 보험, 관리비, 결혼서비스업, 장의서비스업, 독서실, 유학원, 카인테리어, 담배자판기

- 중점검토 업종 : 결의 시 상호명 추가 기재(적요)

업종 분류	상세 업종명
유통/쇼핑	인터넷PG, 인터넷종합Mall, 전자상거래PG, 기타사무용품, 기타용역서비스(예.골프대행)
공무원 관련	공무원연금매점, 구내매점(국가기관 등), 기타비영리유통

※ 중점검토 업종은 시스템상 차단은 하지 않으나, 유가증권 구매여부·대외협력 업무 관련성·협찬·사적 사용 등의 검토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므로 집행자 및 결재자의 책임下 재원 집행(집행부서 책임제)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재원 운영 기준

- ② 사용 시간 및 원격지 사용 주의 : 결의 시 업무 처리 목적임을 상세히 기록(적요)
 - 사용 주의 시간 : 23시 ~ 06시
 - 휴무일, 공휴일 및 근무지 외 장소
 - 사후 모니터링 예정
- ③ 집행자 및 결재자의 책임 下 재원 집행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 必(기안자와 결재자 분리 必)
- ④ 고의적인 '지출위임전결기준' 왜곡 목적 분할 결제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분할 결제 사유 기록(적요)
- ⑤ 예산 집행 : 내부문서, 구매요청서 등 관련 근거에 의한 비용 집행(부서운영비 외)
 - 지출결의서 작성 시 관련 근거 문서 첨부 필수

2) 차량비카드 집행기준

- 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업무 목적 외 사용 금지
- ② 집행 가능 비용
 - 업무 목적의 주유비, 하이패스비, 주차비, 세차비, 차량수선비, 통행료
 - 세차비 : 지원금액 한도 내 사용 가능(그룹웨어 게시판 > 사내게시판 > 공지사항 > 세차 비용 지원 금액 참조)
 - 차량수선비 : 수리요청서 승인 후 사용 가능(경정비 제외)
- ※ 집행 시 운행일지 작성 必
- ③ 근무지, 사용 목적 등 사후 모니터링 예정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재원 운영 기준

바.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1) 사전 모니터링

- ① 업무추진비 외 지급수수료 등을 통한 접대성 비용
- ② 청탁금지법 및 FCPA 적용 대상자 관련 골프 및 선장품 구매 관련 비용
- ③ 회계처리기준(증빙, 사전서면승인, 적요, 위임전결기준 등) 미준수

2) 사후 모니터링

- ① 유가증권의 대리수령/선 구매 사항, 유가증권 구입이 가능한 계정 외 집행 사항
- ② 청탁금지법 및 FCPA 적용 대상자 관련 유가증권 구매/법인카드 집행 내역
- ③ 사용 제한 시간 및 근무지 외 사용
- ④ 업무 목적 외 사용(차량비카드 등)

kt MOS 북부